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고성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578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전기차 화재, 온열질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및 재해 발생 급증으로 긴급하게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과 홍보(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8. 23. ~ 2024. 8.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구조·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조·구급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조·구급대원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구조·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효율적인 구조·구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및 전문인력 양성
4.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등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구조·구급체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구급 업무 체계 구축 및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조·구급 지원 체계 구축 및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 및 구조·구급 상황에서의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71호, 2024. 1. 2.,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